## ◈ 서울특별시조례 제59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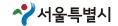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①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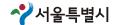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다. 행정정보의 공개(58종)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초과 1컷마다	100원
(라)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다) 사산결금 결심	1매초과마다	50원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 기준)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 기준)	1,5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사) 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기준)	3,500원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기준)	2,000원



	T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아)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2)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 등 열람	1일 1시간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 10 40 0 20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500원
(3)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A3이상	300원
(가) 문서 등 사본(1장 기준)	1매초과마다	100원
(기) 문제 중 자본(18 기군)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A3이상	300원
(나) 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	1매초과마다	100원
(대) 또한 사진 중 사존(18기준)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라)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1) 마이크로필름 사본(출력물1장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2) 마이크로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2)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 출력물)·복제물		
(가) 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A3이상	300원
1) 묘다 돈이 되면/조이초러묘)	1매초과마다	100원
1) 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문서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 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	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나) 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1) 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2) 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 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 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다) 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	2,500원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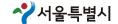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수수료 징수대상 중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1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본문서 및 전산파일의 부과기준과 기준용어 변경 등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대상 중 행정정보 공개사무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원본 문서는 문서대장 및 카드·도면 등의 열람·시청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 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 문서, 대장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 100원 ○ 도면, 카드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 문서, 도면, 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나. 전산파일은 문서대장 및 카드·도면 등의 열람·시청 수수료 기준을 "매"에서 "시간" 으로 하고, 복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로 변경

현 행	개 정
○ 전자파일(문서·대장·도면·카드 등)의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 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다. 또한, 기준용어를 "카드·도면"에서 "도면·사진"으로, "사진·사진필름"에서 "사진필름"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부분 정비
- 라.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014.12.10.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 서울특별시조례 제5934호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